

의안번호	제 529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윤은희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#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발의자 : 윤은희, 이광희, 이양섭,  
김영주, 박우양, 박종규,  
임순묵

## 1. 개정이유

- 하위규정 인용 항(項)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약칭 사용 위치 변경 (안 제1조)
  -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
- 나. 하위규정 인용 항 변경 (안 제6조)
  - “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에 따름”  
⇒ “~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4조, 제7조, 제9조)
  -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변경

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- 다. 입법예고 : 「충청북도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- 라. 협의 : 기획관리실과 협의
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” 를 “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도를” 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를” 로, “휘 장” 을 “휘장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 에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때에는 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한다” 를 “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 에” 로 한다.

제9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 에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과 관련하여 기타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</u>를 상징하는 도기와 문장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규정하고,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상징물“이라 함은 <u>도를</u> 상징하는 도기, 문장, <u>휘 장</u>, 캐릭터, 동물, 식물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</u>를 -- <u>휘장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문장·휘장) ① (생 략)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,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. 1. 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(생 략)</p>	<p>제4조(문장·휘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③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<u>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메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u></p>
<p>제7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상징물 관련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용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제9조(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과 관련하여</u>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